

부산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21385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6. 6. 14.

판결 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 A, B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3,453,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2015. 4. 10.부터 2015. 6. 8.까지는 연 9%, 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5. 2.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3. 접수 제19007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B에 대하여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원고가 소장에 피고 A, B에 대한 청구취지로 기재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3.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2014. 4. 10.부터 2015. 6. 8.까지는 연 9%, 2015. 6. 9.부터 D1)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인데, D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이 2015. 5. 4.이므로 2015. 3.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2014. 4. 10.부터 2015. 6. 8.까지는 연 9%, 2015. 6.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8. D과,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금액을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D이 E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D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A, B은 각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5. 2. 4.경 D이 E에 대한 93,453,98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E는 2015.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10. E에게 93,453,981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B은 2015. 2. 13.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3. 접수 제1900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위변제금 93,453,981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11.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 2015. 4. 10.부터 2015. 6. 8.까지는 연 9%의 각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2015. 6.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3. 3. 28. D, 연대보증인인 피고 B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약 9일 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5. 3. 10.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채무초과상태였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한명인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2. 3. 5.부터 2014. 12. 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7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이라며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마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성진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아파트 제107동

[도로명주소] 부산 해운대구 I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328.49㎡

2~7층 326.65㎡

지하층 312.1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G 대 14,46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2호 철근콘크리트조 59.2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446580분의 5268. 끝.

1) 소송 계속 중 파산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 F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다.